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2041561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20415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3281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32814 판결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13,924.43달러 및 그중 미합중국 통화 353,246.52
달러에 대하여 2020. 9.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88,841.80달러 및 그중 미화 461,686.03달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9. 1. 주식회사 B과 합병하고 명칭을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포괄하여 '원고'라 한다).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은 특수금속 및 비철금속 등을 수출하는 법인이고, D회사(D. 이하 'D'라 한다)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으로 C로부터 동 스크랩 (Copper Scrap) 등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1) 피고는 2013. 10.경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C에 2013. 10. 21.자로 수출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E)를 발급해주었다(별지 1-1 참조).

가) C은 D에 수출하는 동 스크랩 등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선적일로부터 120 일 이내에 전신송금방식 (T/T, Telegraphic Transfer)으로 결제받는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되어 C이 원고에 부담하는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미화 2,000,000달러, 보증비율은 99% 로 하고, 신용보증약정 체결 건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결제된 금액만큼 한도가 살아나는 회전방식으로 운용한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은 2016. 11. 9. 결제조건이 선적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전신송금방식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보증한도는 미화 1,900,000달러로 감액되었다(별지 1-2 참조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신용보증 및 변경된 신용보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2016. 10. 4.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면책기준(2016. 10. 4.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부대출

1) 원고는 2013. 10. 22. C과, 피고가 C에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의 D에 대한 선적서류(수출채권)1) 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1년 만기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은 2014. 10. 22., 2015. 11. 3., 2016. 11. 7. 각 갱신되었다. 2016. 11. 7.자로 갱신되어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의 약정기한은 2017. 8. 22. 이다(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장'이라 한다).

2) C은 2016. 12. 16.부터 2017. 1. 12.까지 D와 사이에, C이 D에 동(Copper), 철(Ferrous), 금속(Metal) 스크랩 (Scrap) 등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7건의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수출계약에 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선적서류를 송부하였다.

수출계약번호 (CONTRACT NO)	수출계약일	품목 (DESCRIPTION OF GOODS)	수량 (QUANTITY)	수출대금 (AMOUNT)
F	2016. 12. 16.	COPPER SCRAP	23.000 MTS	\$100,050.00
G	2016. 12. 22.	FERROUS SCRAP	22.510 MTS	\$92,291.00
H	2016. 12. 23.	METAL SCRAP	45.040 MTS	\$180,610.40
I	2016. 12. 21.	COPPER SCRAP	23.000 MTS	\$118,910.00
J	2016. 12. 27.	COPPER SCRAP-A COPPER SCRAP-B	8.260 MTS 37.740 MTS	\$39,945.36 \$31,475.16
K	2017. 1. 3.	COPPER SCRAP	46.000 MTS	\$234,600.00
L	2017. 1. 12.	FERROUS SCRAP	136.550 MTS	\$45,607.70
합계				\$843,489.62

※ 결제조건(Payment terms): 선하증권(B/L) 기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전신송금방식(T/T)으로 지급

3) 원고는 2016. 12. 22. 부터 2017. 2. 22.까지 C로부터 수출채권매입 신청을 받은 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미화 합계 822,955.56달러를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번호 (M)	대출일 (수출채권 매입일)	만기일	수출계약번호 (CONTRACT NO)	수출대금 (AMOUNT)	대출금액
N	2016. 12. 22.	2017. 5. 18.	F	\$100,050.00	\$100,050.00
O	2016. 12. 23.	2017. 5. 22.	G	\$92,291.00	\$92,291.00
P	2016. 12. 26.	2017. 5. 22.	H	\$180,610.40	\$180,610.40
Q	2017. 1. 2.	2017. 5. 25.	I	\$118,910.00	\$118,910.00
R	2017. 1. 11.	2017. 6. 1.	J	\$71,420.52	\$71,420.52
S	2017. 1. 11.	2017. 6. 8.	K	\$234,600.00	\$234,600.00
T	2017. 2. 22.	2017. 6. 12.	L	\$45,607.70	\$25,073.64
합계				\$843,489.62	\$822,955.56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각 대출 중 외국환거래번호 N 대출 건에 대하여 미화 441.33달러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수입자인 D로부터 위 각 대출의 만기일이 지날 때까지 각 대출금액 상당의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2017. 8.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8. 1. 3. 및 2018. 3. 29. 원고에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 3, 4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채무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1. 12.부터 2019. 1. 1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원금 중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였다.

외국환거래번호 (M)	대출일 (수출채권 매입일)	만기일	대출금액	변제일	변제금액	대출원금 잔액
N	2016. 12. 22.	2017. 5. 18.	\$100,050.00	2017. 6. 14.	\$441.33	\$99,608.67
				2018. 1. 12.	\$93,510.38	\$6,098.29
				2018. 1. 19.	\$6,028.29	\$70.00
O	2016. 12. 23.	2017. 5. 22.	\$92,291.00	2018. 1. 19.	\$92,291.00	—
P	2016. 12. 26.	2017. 5. 22.	\$180,610.40	2018. 1. 19.	\$164,335.02	\$16,275.38
Q	2017. 1. 2.	2017. 5. 25.	\$118,910.00	—	—	\$118,910.00
R	2017. 1. 11.	2017. 6. 1.	\$71,420.52	—	—	\$71,420.52
S	2017. 1. 11.	2017. 6. 8.	\$234,600.00	2018. 5. 25.	\$64,928.44	\$169,671.56
				2019. 1. 16.	\$22,305.49	\$147,366.07
T	2017. 2. 22.	2017. 6. 12.	\$25,073.64	2018. 12. 27.	\$22,300.92	\$2,772.72
합계			\$822,955.56			\$356,814.6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18 호증, 을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는 이외에는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U, V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의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수입자인 D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의 미상환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상환 대출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용보증상의 보증채무에는 ① 신용보증한도(미화 1,900,000달러)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부대출금에 보증비율(99%)을 곱한 대출원금 및 ②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기간별 환가율)에 의한 이자액이 모두 포함된다(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통지일(2017. 6. 19.)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2017. 7. 19.)에 피고에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7. 8. 19.까지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 항). 다만, 원고는 위 보증채무이행의 청구기한 내인 2017. 8. 19.까지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청구일 (2017. 8. 22.)까지 3일 동안 발생한 이자액은 청구할 수 없다(이 사건 약관 제6조 제2항 제2호). 결국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일보다 3일 뒤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이자율인 '기간별 환가율2)'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상의 보증비율(99%)을 곱한 잔존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액을 계산하면 잔존 대출원금은 미화 353,246.52달러³⁾ 이고,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자액 (2020. 8. 10.자 기준)은 미화 60,677.91달러가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6 참조).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미화 413,924.43달러 (=

353,246.52 + 60,677.91) 및 그중 대출원금 미화 353,246.52달러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대출실행 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조건 위반의 한 종류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면서,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실행 시 수하인, 도착지 등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요구하는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채무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에 따라 면책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됨에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실 또는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 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은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또는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 위반의 예시로서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수출계약상 수출대금지급의무자는 D 임이 분명하나, 관련 선적서류인 각 상업송장 및 운송증권에는 D가 수출대금지급의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수하인란에도 D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의 중요항목이 모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 항에 따라 면책되었다.

3) 원고는 수출자인 C이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 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은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로서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수입자 이외의 제3자(수입자의 자회사 등)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실행 이전에 C이 D에 대한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 출처 및 사유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채무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에 따라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 징구의 신용보증조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4항은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조건이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은 '이 약관에 의한 신용보증부대출은 은행이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통지 및 보증(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하여 은행에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은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의 한 종류로 '특약사항 위반 -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용방법란에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특약사항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실행 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징구할 것을 신용보증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어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통상의 일반적인 수출거래와 달리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은 수입자인 D가 아닌 제3자가 실제물품을 수령하는 수하인이 되어 인도청구권을 갖는 이례적인 경우인데, 수하인과 도착지 등은 수출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하인, 도착지 등을 누락한 수출계약서를 징구한 것은 신용보증조건 중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총 7건의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면서 C로부터 대출 건마다 수출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사본을 징구하였는데, 위 7건의 각 수출계약서 (SALES CONTRACT)에는 수출자(Seller), 수입자(Buyer), 수출품목(DESCRIPTION OF GOODS),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결제조건(Payment)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별지 4-1 참조).

② 위 7건의 각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는 각 수출품목의 수하인(CONSIGNEE)과 도착지(FINAL DESTINATION)가 수입자의 상호인 'D' 및 그 주소지인 싱가포르(SINGAPORE)'가 아닌 ㉠ W회사, 길룽(KEELUNG) / 타이완(TAIWAN), ㉡ X회사, 상해(SHANGHAI) / 중국(CHINA), ㉢ Y회사, 베이징아오(BEIJIAO) / 중국(CHINA)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별지 4-2,3,4 참조).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 16호증, 을 제17,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3) 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실행 당시 C로부터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목적 및 취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 외국환은행이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가 수출자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대지급(代支給)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단기수출보험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입자의 대금미결제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출자는 단기 수출보험을 통해, 외국환은행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통해 피고로부터 보상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도해하면 '별지 5' 와 같다. 이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수출자는 외상으로 수출한 후 선적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수출채권(선적서류) 매입방식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약정된 변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와 같이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대금결제등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보호장치를 제공하여 주고, 금융기관에게는 대출금 회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도록 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출신용보증은 보증조건이나 위험범위 등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 내지 제한할 수 있어 수출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출신용보증의 기능에 비추어 피고의 면책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면 피고가 허위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증할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 그와 반대로 이를 완화하여 폭넓게 해석하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측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및 신용보증조건의 특정

(가) 피고는 수출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청약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상사현황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4, 13조, 서식 1, 2, 3, 5 참조). 외국환은행은 피고가 신용보증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통지 및 보증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도록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는데, 이로써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게 된다(이 사건 약관 제4조 참조). 여기에서 '신용보증조건'이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하고, 그중 특약사항(특기사항)에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별지 1 참조). 위와 같이 신용보증조건은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신용보증조건으로서 특약사항이 추가될 경우에는 다른 신용보증조건인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과 같이 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출계약과 관련한 선적서류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인 C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각 대출 당시 C로부터 수출계약서와 선적서류를 모두 징구하였다.

(나) 피고는 수출신용보증 심사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제출받는 수출신용보증청약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상사현황표 등을 통해 수입자, 결제조건, 거래형태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실수입자 유무, 계약체결내용, 수출입자 거래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수출업체의 기업 개황과 주요 수출거래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신용보증조건을 특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하인과 도착지 등이 수출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여서, 수입자가 아닌 제3자가 실제물품을 수령하는 수하인이 되어 수입자와 수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며, 이는 수출계약서 자체를 아예 징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면,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를 신용보증조건인 특약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에 수입자와 수하인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채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와 수하인이 일치하지 않는 수출계약의 계약서 효력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원고에게 수출계약의 거래구조 및 형태에 대한 위험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피고는 브라질 교포수입자의 경우 보증사고율이 높아 이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포수입자가 선적서류상의 수하인이 되도록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수출운송서류의 '수하인 (CONSIGNEE)' 이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다(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10조 제7호 참조). 위와 같이 보증사·고율이 높아 별도로 관리하는 브라질 교포수입자의 경우에도 '수출계약서'가 아닌 '수출운송서류'의 수하인 기재를 수출계약서상의 수입자와 일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수출계약서에 수하인과 도착지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하인과 도착지 등이 수출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수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소를 수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수출계약서의 수입자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기재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수출계약서에 수하인과 도착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면,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가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수출계약서에 수하인과 도착지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거나 수출계약의 수입자와 수하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에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신용보증조건위반과 면책사유 요건

(가) 피고의 보증채무 면책사유 중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면책사유인 '원고가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한 경우(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등과 달리 신용보증조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보증사고발생과의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참조).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제되므로, 다른 면책사유와 달리 신용보증조건위반 여부는 신용보증서의 기재만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면책기준 제1 의 다. 2)항에서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운용방법에,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다른 계약조건인 수하인, 도착지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통상적인 계약체결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은 계약당사자의 서명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사건 면책기준은 수출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수입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계약서에 수하인, 도착지 등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완하지 못한 채 수출계약서 자체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수출자가 '수하인, 도착지, 선적지, 선적기한' 중에서 일부 요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위 수출계약서에 대하여 외견상의 진정성, 즉 상태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하인, 도착지, 선적지, 선적기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된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어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 등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결국 수출계약에 관한 합리적인 거래당사자들의 의사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수입자의 서명 이외에 다른 계약조건의 경우에도 그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출계약서와 함께 징구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수출계약서에는 수하인과 도착지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에만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면 수출계약에 따른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와 대금지급의무자, 물품의 적법한 인도 및 대금채권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는 계약번호(CONTRACT NO) 등으로 특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동일한 수출계약에서 작성된 서류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문제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은 불요식계약이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도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특정한 양식의 서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수출계약실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수하인, 도착지 등이 중요한 계약조건이고 수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 내지 서류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작성되는 주문서 (Purchase Order)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등에 관한 것으로 이를 수출계약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수출계약이 일정한 방식이나 서면을 갖추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등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은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수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예시로서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 주요내용 불일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항목으로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 제9항에서는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예시로서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 항 제3, 4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OA(Open Account)방식의 수출채권은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순수한 외상 수출채권이어서 그 수출채권 매입시 은행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수출자, 수출거래 자체, 수출서류 등 수출채권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수출대금 미회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감독원도 OA방식 수출채권 매입 관련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여 왔으며,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통상의 주의의무로 심사를 하고 수출자가 수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출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OA방식의 이 사건 각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출계약서의 수입자와 선적서류상수하인 (consignee) 의 기재가 불일치하거나 모순되고, 특히 선적서류의 수하인란에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선적서류)의 주요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와 관련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에는 수입자(Buyer)가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수입자란에는 D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각 수출계약과 관련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에는 최종 수하인 (Final Consignee) 이 물품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하인(Consignee) 란에는 D가 아닌 다른 제3의 업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4 참조). ② 이 사건 각 대출의 수출대금 미결제에 의한 신용보증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수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적서류에만 기재된 수하인 W회사, X회사, Y회사 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상 수입자인 D가 단순한 소개 내지 중개의 역할만 한 것인지, 진정한 수입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의 중요 항목이 모순됨에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와 선적서류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을 문리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수입자와 수하인의 중요 항목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서 개설의뢰인란 (APPLICANT'S NAME) 란에는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수입자인 D의 상호(D)만 기재되어 있고, 최종 수하인(Final Consignee) 란에는 위 D의 주소지 (Z)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최종 수하인'의 당사자 표시를 괄호 안에 기재하여 '개설의뢰인'란의 바로 밑에 위치시켜 동일한 당사자임을 병렬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개설의뢰인과 최종 수하인이 동일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 상호와 주소지가 공통되므로 2줄로 맞추어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개설의뢰인과 최종 수하인 중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업송장의 선적서류에서 수출계약상 수입자인 D가 최종 수하인으로서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The Final Consignee(Purchaser) will directly make payments via below information to exporter(		C
Amount of payment	USD100,050 00	
APPLICANT'S NAME	D	
(Final Consignee)	Z	

② 선적서류는 수출자인 C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는 서류로서, 수출입자 사이에 제3자와 제3의 장소를 수하인과 도착지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수출자는 수출계약에 따라 그 수출품목의 명세 등을 기재한 상업송장을 수입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상업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이 수입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상업송장을 송부받음으로써 그 수하인과 도착지 등의 표시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선적서류의 착하통지처 (Notify Party2) 란에도 수입자 D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하인에게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품목이 도착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의 계약번호,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등의 기재와 선적서류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운송증권의 각 해당 부분 기재가 일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수출계약과 같은 내용의 운송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으며, 수출입자인 C과 D사이에 제3자를 수하인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피고는 수출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청약서와 거래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10조 제7호는 '교포수입자가 선적서류상의 수하인이 되도록 수출신용보증서의 특약란에 수출운송서류의 수하인(CONSIGNEE)이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유효함을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있어서도 선적서류의 수하인과 수출계약의 수입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선적서류의 수하인란에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 중 특약사항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선적서류의 수하인이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신용보증서가 유효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에서도 수출계약의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모순되는 중요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선적서류의 수하인과 수입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내용과 선적서류의 중요 항목이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은행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 인하여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나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 없다.

3) 수출자의 자기자금 상환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에서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수입자 이외의 제3자(수입자의 자회사 등)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에는 은행이 매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이 있음에도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 직전에 동일한 수출입자인 C와 D 사이에 수출자의 자기자금으로 수출대금이 반복적으로 결제되는 등 이상징후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2016. 12. 22.부터 2017. 2. 22.까지 7차례에 걸쳐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는데, C은 그 직전인 2016. 10. 25.부터 2016. 12. 16.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다른 별도의 수출신용보증약정 (NEGO)에 의한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출자인 C 의 자기자금으로 수출대금을 결제하였다. ② 금융감독원은 2018. 1. 25.경 원고에 대하여 'O/A방식의 수출채권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수출채권대금이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정상입금되지 않고 수출자가 자기자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등의 이상징후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후에 다른 은행이 이미 매입한 수출채권을 중복 매입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경영유의조치를 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선적서류의 추가 매입을 실시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면책사유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당해 신용보증관계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증채무를 면책하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문리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은행이 그 신용보증관계에 따라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에 대한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에 면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가 이루어진 수출계약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것인지는 여부, 나아가 어떠한 종류의 수출신용보증으로 담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이나 당해 수출신용보증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은행이 수출자의 수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보증조건이나 위험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수출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될 위험이 발생한다. 피고는 은행이 대출실행 당시 확인해야 할 자금자금 결제의 시기 및 대상 등 그 범위를 미리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기준에는 원고가 신용보증부대출의 실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있다.

② 피고가 보증심사 및 보증약정을 거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실제수출이 이루어지거나 수출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고, 원고가 수출통지 및 보증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비로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청약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수출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받지 않는 한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단계에서는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이나 당해 수출신용보증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피고는 신용보증조건으로 자기자금 결제내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 있고, 은행에 대하여는 대출실행 과정에서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도록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신용보증조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O/A방식의 수출채권 매입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쳤다. 결국 피고가 면책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당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수출계약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당해 수출신용보증서에 의한 수입자의 신용위험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수출계약에 의한 자기자금 결제내역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를 보증사고가 발생한 당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수출계약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보증심사를 거쳐 자신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도, 과거에 존재했던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근거로 적법하게 성립된 신용보증관계에 의한 보증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어 피고의 면책사유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당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수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자기자금 결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단계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청약을 심사하고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동일한 수출입자간 수출거래 결제실적 중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를 포함하여 수입자 외 제3자 결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거래실적증명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4조 참조). 이는 당해 신용보증과 무관한 별도의 신용보증관계나 과거의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수출거래에서 비롯된 자기자금 결제내역 등의 수출거래실적은

보증약정 체결 및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피고가 심사하고, 수출신용보증서가 발급된 후 해당 보증서에 따라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자기자금 결제등의 수출거래실적은 대출실행 은행인 원고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 매입은행이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계입한 경우에 면책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최초 매입'의 개념을 배제한 채 '추가 매입'한 경우만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개념적으로 보더라도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이후의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출입자간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결제실적이 미화 50 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를 통한 계약체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수출거래를 허위계약 내지 수입자 신용에 대한 위험관리의 예외로 분류하여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이후에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과도한 위험관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⑤ 나아가 원고가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에 있었던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 인하여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증명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그 상대방인 수출자가 준수해야 할 신용보증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허위계약 및 수입자 신용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수출거래실적을 확인하되, 피고 스스로 계약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대상의 예외로 규정하여 수출거래실적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면책기준만으로 이 사건 보증사고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책하면, 신용보증조건 및 허위계약에 대한 위험관리 등 신용보증관계에서 비롯되는 수출거래의 실재성과 수입자의 신용에 관한 위험부담이 수출채권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적절한 서면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되 피고가 정한 신용보증조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함으로써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 3,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철우 판사 김형진 판사 원종찬

[별지1-1]4)

수출 신용보증서 (선적후)

귀하
보증서번호: 보증서회차: 000
보증서신청번호:

신용보증한도 : USD 2,000,000.000-/
USD TWO MILLION DOLLARS ONLY

보 험 상 호 :
계약자 주 소 :
수 출 대 표 자 :
계 약 주 소 :
상 대 방 대 표 자 :

L/C 개설은행 :
L/C 확인은행 :
대금지급국 : 싱가포르,
결제조건 : T/T 120 Days 이내

보증서유효기간 : 본 보증서는 최종대출일(신용보증부 대출통지가 없는 경우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이 없는 경우 효력 상실

보증본제성립조건 : 1. 본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부 대출은 은행이 공사 홈페이지의 조희화면이 따라 수출통지 및 보증(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신용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됨(약관제4조)
2. 은행이 수출통지의 결제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의 조희화면이 따라 추가 보증(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에 실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약관제4조)

*** 특약사항 ***

- 본 보증서는 최전 운용됨. - 본 보증서에 의거한 (수출은 보증서 발급일 이후 선적분위 한하며, 귀행이 다
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가.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나.
(1)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귀행 정의의 계좌로 지정 또는 (2)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귀행이 개설
된 귀행이 관리가능한 수출자 정의의 계좌로 지정 - 약관 제 5조(신용보증부 대출의 실행금지) 제1호는 적
용되지 아니함. - 본 보증서(보험증권)는 외환은행과의 「출소·통전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특별
출연 협약보증(보험) 건임.

수출신용보증서

(선택후)

귀 하		보증서번호
신용보증 한도	USD 1,881,000 (미국 달러) (미화 및 미화 상당액만 인정됨) (보증채무회고액 : USD 2,445,300)	
수출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수입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지급 보증인		
L/C 은행		
환입 은행		
결제지 및 국	싱가포르	
결제조건	T/T 150 Days 이내	
보험비율	99%	
대금결제금액	USD 1,900,000	
보증서 유효기간	본 보증서는 최종대금(신용보증부 대금)을 거는 경우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대금이 없는 경우 효력 상실	
보증관계 성립요건	1. 본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부대출은 은행이 공사 홈페이지의 조폐화면에 따라 수출통지 및 보증(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약관제4조) 2. 은행이 수출채권의 결제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의 조폐화면에 따라 추가 보증(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에 실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약관제4조)	
특기사항	- 본 보증서는 최선종용함. ※ 본 보증서에 의거한 대금회(보험)에 대한 조폐회 고지(보증)를 의무화한 경우(제1항) ※ 수출통지(보험)료 납부사실(보험) 확인(약관제4조) 나. (1)수출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할지의 제1회 지정 또는 (2)수출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해 개입된 수출과 일치지 제1회 지정. 약관 제11조(신용보증부 대출의 실행절차)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기발급된 보증서(보증서번호: 38-1310-3840-001)에 의해 보증관계가 성립된 대금회(보험)는 본 보증서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하여 본 보증서의 발급으로 기발급 보증서는 효력을 상실함. - 보증한도 금액 이전 보증부 대출실행전에 대해서는 금액 전 보증한도를, 보증한도 금액 이후 보증부 대출실행 전에 대해서는 변경 후 보증한도가 적용됨. -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대출한도는 USD 1,900,000이며, 공사와 여정간의 책임분담비율은 99% 대 1%임.	

※ 보증채무회고액의 약관에 따라 공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보증부 대출 원금, 미결제액 및 고지한도를 합함 (신용보증한도의 130%)

2016년 11월 09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장

출고일 NO

[별지2]6)

제1장 총칙

이 약관은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신용보증서"라 함)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이하 "수출재권"이라 함)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대지급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신용보증"이라 함)의 내용을 정하는 약관입니다.

제2조(신용보증대상) ① 이 약관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일, 수입자의 물품수량일, 일람일 등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한 때에 적용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국내에서 생산 가공 집하된 물품(용역 포함)을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거래
2.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 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중략)

제3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은행"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②이 약관에서 "수출자"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③이 약관에서 "수입자"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입자를 말합니다.

④이 약관에서 "신용보증조건"이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부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한 대출로서 공사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어 보증비율에 의해 공사가 책임분담하는 부분과 은행이 책임분담하는 부분을 합한 건별대출을 말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대출실행"이라 함은 수출재권의 매입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계좌입금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한도"라 함은 신용보증부대출금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회전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⑧ 이 약관에서 "회수금"이라 함은 은행이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수출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중략)

제2장 보증관계

제4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약관에 의한 신용보증부대출은 은행이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통지 및 보증(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중략)

제5조(보증하는 채무) 공사는 은행이 수입자(신용장개설은행을 포함함)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부담하는 신용보증부대출 상환채무금액을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공사가 보증하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1. 신용보증부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신용보증한도 범위 내의 신용보증부 대출원금
2. 제1호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체이자는 제외됨)에 의한 이자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미수이자액은 보증채무로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용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사고발생 통지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
3. 제16조 제2 항에서 제출을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은행이 당해 서류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

제7조(면책)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2. 은행이 제2조(신용보증대상), 제9조(신용보증조건의 변경) 또는 제11조(신용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은행이 제10조(통지의무), 제12조(주의의무) 또는 제17 조(권리보전)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 다만, 은행이 제10조 제1항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는 당해 신용보증관계에 한함.

4.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중략)

②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하여 은행에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중략)

제3장 은행의 의무

(중략)

제11조(신용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은행은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따로 공사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새로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은행이 동일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무신용장거래에서 수출채권(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출거래를 포함함)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인수되지 아니한 경우
(중략)

제12조(주의의무) 은행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 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3조(조사에 응할 의무) 은행은 공사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장표, 서류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와 관련된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4장 보증채무이행 청구 및 지급

제14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금액) 공사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제6조(보증채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잔액을 신용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신용보증채무 이행 전까지 지급받은 금액(연제이자 제외)

2. 신용보증채무 이행 전까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권리의 행사로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

제15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은행은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한 날(결제기일 이전에 사고발생을 통지한 경우에는 결제기일)부터 1월이 지난 뒤 공사에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신용보증이행청구서에 신용보증서와 신용보증부대출 관련 서류의 사본, 신용보증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 사고발생통지시 제출 서류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제16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공사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은행은 공사의 신용보증채무 이행과 동시에 공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증채무 이행시 제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따라 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여부 또는 지급할 대위변제금의 결정을 위하여 7영업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신용보증채무 이행기한은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채무이행기한에 공사가 은행에게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날부터 은행이 당해 자료를 거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저분한 경우

2. 공사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여 보증채무이행 대상여부 판정에 특별히 시일을 요하는 등 공사가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 공사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부대출금의 통화 또는 원화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별지 3]8)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관

제 정 : 1994.11. 5

1차개정 : 1996.10.17

2차개정 : 1997. 6.20

3차개정 : 1998. 7. 1

4차개정 : 2001. 7. 1

5차개정 : 2002. 1. 2

6차개정 : 2006. 1. 1

7차개정 : 2007. 8. 2

8차개정 : 2007. 10.1

9차개정 : 2008. 6.12

10차개정 : 2010. 7. 6

11차개정 : 2012. 9. 1

12차개정 : 2016.10. 4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면책기준

제 정 : 2016. 10. 4.

이 면책기준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은행에 통지하는 면책기준으로서, 이 면책기준 시행일 이후에 이 사건 약관 제4조에 따라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면 책 사 항	운 용 방 법
1.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 은행은 매입시 매입서류가 신용보증조건(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특약사항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하여야 함
가. 신용보증한도 초과	
나.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보증비율 위반	
다. 특약사항 위반	
1) 건별승낙 보증서를 회전 운용한 경우	
2)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 수출계약서: 수출입자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함 - 수출계약서에 수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는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수출계약서에 수입자의 서명은 있으나 서명자의 성명, 직책 및 소속회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출자로부터 서명자의 성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한 서류를 징구하여야 함 ■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 기본징구서류: 운송서류, 상업송장 - 추가징구서류: 가격조건에서 요구되는 경우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기타 수출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NET거래의 경우: 수입자의 물품수령을 직접 증빙하는 서류 - 사본은 작성자의 서명이 있는 원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복사한 문서를 말함

(중략)

8. 은행이 약관 제12조(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 매입 시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 은행이 동일한 선적서류를 중복하여 매입한 경우. 다만,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
------------------------------	--

[별지 4-1]9)

면책사항	운용방법
	우 수출계약서 금액 한도로 매입한 경우는 가능 -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수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매입한 경우 (예시) 1. 발행인(운송인) 서명·발행번호·선적일이 없거나 운송인 확인이 되지 않는 B/L 2. 발행인(운송인) 표기·서명·스탬프 등이 없는 B/L 이외의 기타 운송서류 3. 수출자 또는 수입자 서명이 없는 계약서 등(다만 수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한 경우는 제외) 4.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 주요 내용 불일치 가. 선적기일 위반 나. 수출계약에서 요구한 서류 누락 다. 분할선적, 환적을 계약서에서 금지하였는데도 분할선적 또는 환적한 경우 라.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 5. 직수출건 매입 시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신고서류 등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에 접속하여 기적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6. Surrendered B/L인 경우, 다만, 수입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징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7.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수입자 이외의 제3자(수입자의 자회사 등)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 8. 기타 매입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9.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건을 매입한 경우	■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건을 매입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해당건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함. 단, 수출계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 ■ 은행은 수출자가 수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출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는지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함 ■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 위반의 예시 - 선적기일 위반 -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 - 수출계약에서 요구한 서류 누락 - 분할선적, 환적금지 위반 - 수출계약에서 요구한 운송증권이 아닌 경우 (사례) 수출계약상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입은행이 본선 적재 부기가 없는 수취 선하증권을 매입한 경우 - 수출계약에서 금지한 국적선에 선적한 경우 - 계약서상 물품 수량, 금액과 불일치

(이하 생략)

수출계약서

SALES CONTRACTCONTRACT NO :

2016-12-16

as Seller, hereby confirms having sold to the following goods by this sales contract made on the above date an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set forth.

DESCRIPTION OF GOODS	QUANTITY	UNIT PRICE	AMOUNT
COPPER SCRAP	23 000 MTS	\$4,350	\$100,050.00
TOTAL	23 000 MTS		\$100,050.00

□ Payment

Payment terms:	Telegraph Transfer within [150] days From bill of lading date
----------------	---

The Buyer shall pay the invoice value of the goods to the Seller's account () with the () by means of Telegraph Transfer within [150] from Bill of lading date.

Seller

Buyer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1. SHIPPER		9. NO. & DATE OF INVOICE NO. DATE DEC 18 2018		
2. CONSIGNEE		10. CO. & DATE OF T/T DATE DEC 18 2018		
3. NOTIFY PARTY1		11. T/T OR L/C ISSUING BANK		
4. NOTIFY PARTY2		12. REMARK CONTRACT NO.		
5. PORT OF LOADING INCHEON/KOREA	6. FINAL DESTINATION KEELUNG/TAIWAN			
7. CARRIER	8. DATE ON/OR ABOUT DEC 19 2018			
13. MARKING NO OF PACKING	14. DESCRIPTION OF GOODS	15. QUANTITY	16. UNIT PRICE	17. AMOUNT
NO MARK			CNE KEELUNG TAIWAN	
	COPPER SCRAP	25 000 MTS	\$4,360	\$100,060.00
1X 20' CONTAINERS				
TOTAL		25 000 MTS		\$100,060.00
CONTAINER NO./ SEAL NO.				
The Final Consignee(Purchaser) will directly make payments via below information to exporter				
Amount of payment USD100,060.00				
APPLICANT'S NAME				
(Final Consignee)				
BENEFICIARY CUSTOMER:				
BENEFICIARY ACCOUNT				
BENEFICIARY'S BANK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1. SHIPPER		9. NO. & DATE OF INVOICE NO. 1 DATE DEC 18 2016		
2. CONSIGNEE		10. CO. & DATE OF T/T DATE DEC 18 2016		
3. NOTIFY PARTY1		11. T/T OR L/O ISSING BANK		
4. NOTIFY PARTY2		12. REMARK CONTRACT NO.:		
5. PORT OF LOADING INCHEON/KOREA	6. FINAL DESTINATION KEELUNG/TAIWAN			
7. CARRIER	8. DATE ON/OB ABOUT DEC 19 2016			
13. MARKING NO. OF PACKING	14. DESCRIPTION OF GOODS	15. GROSS WEIGHT	16. TARE- WEIGHT	17. NET- WEIGHT
NO MARK				CNF. KEELUNG TAIWAN
	COPPER SCRAP	23.000 MTS		23.000 MTS
1X 20' CONTAINERS				
TOTAL		23.000 MTS		23.000 MTS
CONTAINER NO. / SEAL NO.				
The Final Consignee(Purchaser) will directly make payments via below information to exporter				
Amount of payment: USD100,050.00				
APPLICANT'S NAME				
(Final Consignee)				
BENEFICIARY CUSTOMER				
BENEFICIARY ACCOUNT				
BENEFICIARY'S BANK				

선하증권

Place:			
Company:			
Name, Title:			
Percentage in:		Place of receipt INCHEON, KOREA, CY	
Date issued		Place of delivery KEELUNG, TAIWAN, CY	
Port of Loading INCHEON, KOREA		Port of Discharge KEELUNG, TAIWAN	
Container No. BY MARK		Description of goods 20 X 1 (1 CONTAINER)	
Gross Weight 23,000.000 KGS		Measure 20.000 CBM	
SHEPHERD LOAD STORAGE & COUNT SAID TO BE: COFFER SCRAP *14 FREE DEMURRAGE & DETENTION DAYS NOTIFY PARTY 2 			
Total No. of containers or packages for cargo "FREIGHT PREPAID" ONE (1) CONTAINER(S) ONLY.			
Freight and charges	Amount paid	Date	For Freight
			AS ARRANGED
Freight prepaid at SEOUL, KOREA		Freight payable at	
Total prepaid is		NO. of original B/L	
Shipped on board (date & others) 2016/12/19		THREE / 3	
Place and date of issue SEOUL, KOREA 2016/12/19			

Revised 01/05/2011

클 세 4-4호 증

ORIGINAL

INCHEON, KOREA, CT

KEELUNG, TAIWAN, CT

INCHEON, KOREA

KEELUNG, TAIWAN

NO MARK

20 X 1
(1 CONTAINER)

25,000.000 KGS

20,000 CM

SHIPPER LOAD STORAGE & COUNT
SATISFIED TO SHIP

COSYER SCHAT

*14 FREE DEMORRAGE & DETENTION DAYS

NOTIFY PARTY 2

"FREIGHT PREPAID"
ONE (1) CONTAINER(S) ONLY.

FREIGHT ALL AS ARRANGED

원본대조필

SEOUL, KOREA

SEOUL, KOREA 2016/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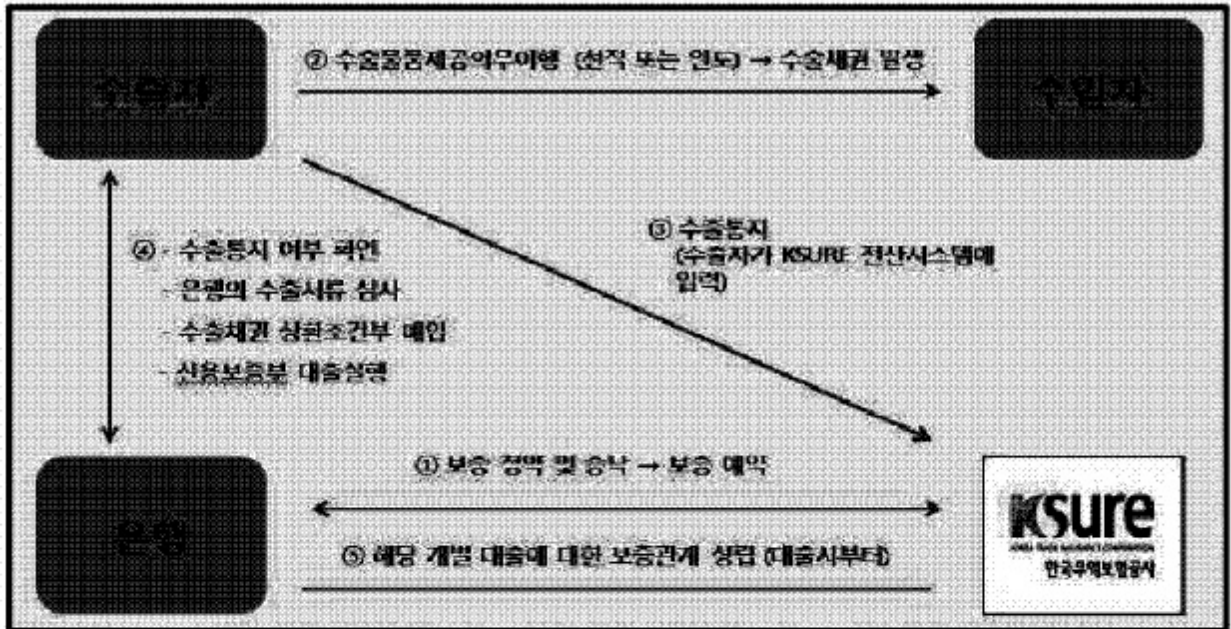
2016/12/19

을 제4-4호증

AS THE CARRIER

[별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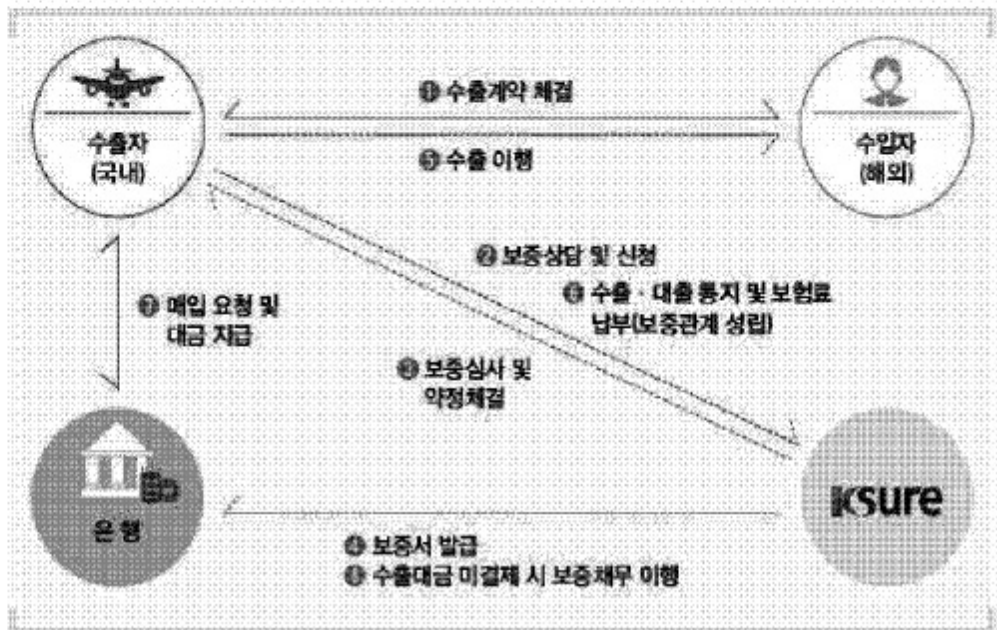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구조10)



제도 개요

①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상용구조



[별지6]

보증채무 청구금액 계산내역11)

(단위: 미화 달러)

■ 원고가 계산한 청구금액 내역

기준일 2020-08-10

거래번호	거래금액	거래잔액 (원금)	보증채무청구				일수	이율 (%)	이자금액	청구원리금 합계
			청구금(99%)	부리대상금액	기간					
					부터	까지				
	100,050.00	100,050.00		99,049.50	2017-05-21	2017-06-13	24	4.01600%	265.18	
		99,608.67		98,612.58	2017-06-14	2018-01-11	212	4.01600%	2,332.16	
		6,098.29		6,037.30	2018-01-12	2018-01-18	7	4.01600%	4.71	
		70.00	69.30	69.30	2018-01-19	2020-08-09	934	4.01600%	7.22	2,609.27
	92,291.00	92,291.00		91,368.09	2017-05-25	2018-01-18	239	4.01600%	2,436.03	
		0.00	0.00	0.00					0.00	2,436.03
	180,610.40	180,610.40		178,804.29	2017-05-25	2018-01-18	239	4.01656%	4,767.90	
		16,275.38	16,112.62	16,112.62	2018-01-19	2020-08-09	934	4.01656%	1,679.05	6,446.95
	118,910.00	118,910.00	117,720.90	117,720.90	2017-05-28	2020-08-09	1170	4.01757%	15,370.93	15,370.93
	71,420.52	71,420.52	70,706.31	70,706.31	2017-06-04	2020-08-09	1163	4.03378%	9,213.98	9,213.98
	234,600.00	234,600.00		232,254.00	2017-06-11	2018-05-24	348	4.03378%	9,056.32	
		169,671.56		167,974.84	2018-05-25	2019-01-15	236	4.03378%	4,441.87	
		147,366.07	145,892.40	145,892.40	2019-01-16	2020-08-09	572	4.03378%	9,350.57	22,848.76
	25,073.64	25,073.64		24,822.90	2017-06-15	2018-12-26	560	4.06239%	1,568.62	
		2,772.72	2,744.99	2,744.99	2018-12-27	2020-08-09	592	4.06239%	183.37	1,751.99
	822,955.56	356,814.69	353,246.52	353,246.52					60,677.91	413,924.43

■ 이 판결 선고일 (2020. 9. 24.)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금액12)

▶ 거래번호 N 대출 건

$$99,049.50 \times 24/365 \times 0.04016 = 261.55$$

$$98,612.58 \times 212/365 \times 0.04016 = 2,300.21$$

$$6,037.30 \times 7/365 \times 0.04016 = 4.64$$

$$69.30 \times 934/365 \times 0.04016 = 7.12$$

$$69.30 \times 46/365 \times 0.04016 = 0.35$$

▶ 거래번호 O 대출 건

$$91,368.09 \times 239/365 \times 0.04016 = 2,402.66$$

▶ 거래번호 P 대출 건

$$178,804.29 \times 239/365 \times 0.0401656 = 4,702.59$$

$$16,112.62 \times 934/365 \times 0.0401656 = 1,656.05$$

$$16,112.62 \times 46/365 \times 0.0401656 = 81.56$$

▶ 거래번호 Q 대출 건

$$117,720.90 \times 1170/365 \times 0.0401757 = 15,160.37$$

$$117,720.90 \times 46/365 \times 0.0401757 = 596.04$$

▶ 거래번호 R 대출 건

$$70,706.31 \times 1163/365 \times 0.0403378 = 9,087.76$$

$$70,706.31 \times 46/365 \times 0.0403378 = 359.44$$

▶ 거래번호 S 대출 건

$$232,254.00 \times 348/365 \times 0.0403378 = 8,932.26$$

$$167,974.84 \times 236/365 \times 0.0403378 = 4,381.02$$

$$145,892.40 \times 572/365 \times 0.0403378 = 9,222.48$$

$$145,892.40 \times 46/365 \times 0.0403378 = 741.66$$

▶ 거래번호 T 대출 건

$$24,822.90 \times 560/365 \times 0.0406239 = 1,547.13$$

$$2,744.99 \times 592/365 \times 0.0406239 = 180.86$$

$$2,744.99 \times 46/365 \times 0.0406239 = 14.05$$

▶ 2020. 8. 10.자 기준 이자금액 합계 59,846.70

$$(261.55 + 2,300.21 + 4.64 + 7.12) + (2,402.66) + (4,702.59 + 1,656.05) + (15,160.37) + (9,087.76)$$

$$+ (8,932.26 + 4,381.02 + 9,222.48) + (1,547.13 + 180.86) = 59,846.70$$

▶ 2020. 9. 24.자 기준 이자금액 합계 61,639.80

$$59,846.70 + (0.35 + 81.56 + 596.04 + 359.44 + 741.66 + 14.05) = 61,639.80$$

<끝.>

1)이 사건 약관 제1조 참조.

2)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별 대출실행일에 고시된 환가료율을 기준으로 만기일 하루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가료를 C로부터 선납받았다.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일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만기가 존재하지 않아 '기간별 환가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약정이자율로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이 사건 각 대출거래별 선납 당시 적용한 환가료율이라고 볼 수 있다. 기간별 환가율에 대해서는 갑 제18호중 참조.

3)[계산식] $\$353,246.52 = \$69.30(= \$70.00 \times 99\%) + \$16,112.62(= \$16,275.38 \times 99\%) + \$117,720.90(= \$118,910.00 \times 99\%) + \$70,706.31(= \$71,420.52 \times 99\%) + \$145,892.40(= \$147,366.07 \times 99\%) + \$2,744.99(= \$2,772.72 \times 99\%)$ (각 소수 둘째자리미만 버림. 이하 같다)

4)갑 제5호증의 1 참조.

5)을 제2호증의 1 참조.

6)갑 제6호증 참조.

7)이 사건의 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8)을 제11호증의 2 참조.

9)총 7건의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을 제4 내지 10호증 참조) 중에서 편의상 2016. 12. 16. 자 수출계약에 대한 수출계약서(을 제4호증의 1), 상업송창(을 제4호증의 2), 포장명세서(을 제4호증의 3), 선하증권(을 제4호증의 4)을 발체함.

10)2018. 7. 13. 피고 답변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무역보험제도 해설서 참조(2020. 7. 14. 확인) 및 을 제17, 32호증 각 참조.

11)갑 제17호증 참조. 원고는 2020. 8. 10.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화 60,677.91달러의 이자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부리대상금액 $\times$ 일수/365 $\times$ 이율(%)'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① 2020. 8. 10.자 기준 이자금액은 미화 59,846.70달러이고, ② 이 판결 선고일자(2020. 9. 24.)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금액은 미화 61,639.80달러이다. 원고가 구하는 이자금액(미화 60,677.91달러)은 이 판결 선고일자 기준 이자금액(미화 61,639.80달러)의 범위 내에 있다.

12)[계산식] 부리대상금액 × 일수/365 × 이율(%)

13)2020. 8. 10.부터 2020. 9. 2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임. 이하 같다.